

제4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8. 13.(금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- (2010-48-219)

-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의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31조(방송평가위원회)에 의거, 원안대로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함.

<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명단(총 7인) >

분야	성명	성별	현직	
위원장	이경자	여	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	
위원	방송	이수영	여	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
	평가	하연섭	남	연세대 행정학과 교수
	경영	황이석	남	서울대 경영학과 교수
	회계	홍형기	남	선진회계법인 이사
	법률	이희정	여	고려대 법학과 교수
	시청자 단체	이경화	여	학부모 정보감시단 대표

※ 임기 : '10 8. 13 ~ '11. 8. 12

사. 보고사항

1) CJ계열 PP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결과에 관한 사항

- (주)CJ오쇼핑의 (주)온미디어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, CJ계열 PP의 매출액 점유율이 「방송법 시행령」 제4조제8항의 소유제한 상한선(33%)을 초과하는 지에 대한 검토 결과, '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'되었음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< 점유율 산정 및 소유제한 위반 여부 확인결과 >

전체* PP 매출액(백만원)	CJ계열 PP 매출액(백만원)	CJ계열 점유율(%)
1,287,767	390,477	30.32

* '09년 기준, 232개 등록 PP 중 법령에 의해 제외되는 10개 홈쇼핑 사업자, 폐업(3개) · 자료 미제출(33개) ·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겸업(16개)의 사유가 있는 52개 PP를 제외하고 170개 PP를 전체사업자로 함.

2)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○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및 6개 사무의 지방 이양 등을 위해 마련된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일부개정안과 민원인의 제출서류 간소화, 기술인력 자격기준 개선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허성욱 네트워크 기획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음.

○ 주요 내용

①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개정안 주요내용

- 현행법에는 건축물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,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(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)

- 공사업체 등록기준 완화 근거 마련 (안 제14조제2항, 안 제66조제4호)

·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3년마다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여,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

·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사망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, 인력 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전 유예기간 부여

- ‘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천계획’에 따라 현행 국가사무인 ‘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’ 등 6개 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(안 제2조제10호 및 제16호, 제8조제3항부터 제5항,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8조, 제68조의2, 제68조의3)

※ 6개 사무 : 감리원 인정·업무정지·인정취소, 정보통신기술자 인정·업무정지·인정취소

- 공사협회 제공 정보에 대한 수수료 규정 삭제 (안 제73조제4호)

·과거 공사업자에 대한 종합 정보를 별도 인쇄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, 최근 온라인 공개에 따라 수수료 면제

②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주요내용

- 정보통신기술자·감리원의 인정 신청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및 병적증명서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, 온라인상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의 제출 서류 경감 (안 제9조제1항, 제39조제1항)

- 전문 기술인력 자격 기준 개선 (안 별표2, 별표4, 별표6)

·전문대 이수기간(2년제, 3년제)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경력기준을 적용(초급기술자·감리원 : 5년)하였으나,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경력기준을 1년 감면 (5년→4년)

- 공사업 수주에 따른 이직 등을 고려하여, 기술 시공능력 평가항목인 정보통신 기술자의 해당 공사업체 근무기간을 기존 “10개월 이상 근무한 자”에서 “6개월 이상 근무한 자”로 완화하여 공사업체의 부담 경감
- 분할·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신고 기준일 정비 (안 제22조제1항)
- 공사업 양도신고 기준일을 공고이후 법인 등기일 기준으로 정비
-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(안 별표8, 별표10)
- 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을 신고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(1개월)을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, 2차 영업정지 처분(3개월) 및 ‘등록 취소’ 근거 규정 신설
- 전기 및 소방공사업 등 유사업종에 비해 과태료가 과도한 경우, 고의성 여부·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

* 예시

- **(현행)** 설계도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 => 정보통신공사업법(150만원), 전력기술관리법(100만원)
- **(개선)** 설계도서에 서명하지 않은 자 => 정보통신공사업법(100만원), 전력기술관리법(100만원)

아. 기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8. 17(화),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